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
전문위원 노형우

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21년 4월 13일

나. 회부일자 : 2021년 4월 16일

3. 제안이유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도시·군계획 안건을 효율적으로 입안할 수 있도록 조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도시·군계획시설에 대한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 사항 변경(안 제6조의2)

- 용적률 → 연면적

나.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공공시설등 확보 관련 근거규정 변경 및 단서조항 삭제(안 제7조)

다. 사전자문위원회 구성·운영 근거 신설(안 제12조제13항)

라. 제1분과위원회 소관업무 중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관련 단서조항 삭제(안 제14조)

마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약칭 및 용어 정비(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, 안 제7조의2, 안 제8조, 안 제12조, 안 제12조의2, 안 제14조, 안 제15조, 안 제16조, 안 제20조, 안 제25조, 안 제27조)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상위법령인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안 제6조2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제3항제3호의 개정예에 따라 도시·군계획시설에 대한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사항 중 건축물 용적률의 10% 이내를 건축물 연면적의 10% 이내로 변경하였음.
- 안 제7조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공공시설등 확보 관련 근거규정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의2 신설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2호다목에서 법 제52

조의2제1항제3호로 변경하였음.

- 안 제14조는 시행령 제133조제1항제1호의 근거규정 삭제에 따라 조례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음.
- 안 제12조제3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시행령 제114조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·자문 대상 및 그 업무의 구분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고, 2005년부터 충청북도의 특수시책으로 시장·군수가 입안하는 도시·군기본계획과 도시·군관리계획에 대해 사전자문위원회를 운영하던 사항을 도시기본계획, 도시관리계획, 지구단위계획, 도시계획시설 등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정 안건 전반에 대해 효율적으로 입안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언하고,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유도하여 난개발 방지하고 도시계획 업무처리 미숙으로 주민의 재산 피해 및 불편 초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자문위원회를 명문화하고자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
- 입법예고('21. 2. 5.~'21. 2. 25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6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시·군의 효율적인 도시·군계획 입안을 위하여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여 입안 방향을 조언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전자문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함.